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위헌적 파병에 법적 근거 제공 우려

발행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담당 | 황수영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mailto:peace@pspd.org)

## 차례

---

개요 .....	3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	4
1. 헌법적 근거 없는 파병까지 정당화하여 국군 해외파견의 범주를 대폭 확대 .....	4
2. ‘국방교류협력’은 해외파견의 결과이지 목적이 될 수 없음 .....	5
3. ‘유엔 결의안’이 다국적군 파병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음 .....	5
4. 자의적 파병에 ‘교육훈련’ 명목 남용될 수 있음 .....	6
5. 긴급구호와 개발사업 특수성 무시한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 .....	6
6. 위헌성은 물론 남용 위험이 큰 ‘기타 해외파견’ 조항 .....	8
7. 법적 근거 없는 군인의 ‘개별파견’ 문제는 누락함 .....	8
8. 국회는 이미 ‘파견 종료 요구권’을 가지고 있음 .....	9
9. 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도화할 실질적 조항 미비 .....	9
결론 .....	11
참고문헌 Reference .....	12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는바 법률 제정에 반대하는 바임.
- 첫째, 해외 파병의 범위를 ‘다국적군 파병’뿐만 아니라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병’까지 대폭 확대함으로써 헌법에 저촉되는 다양한 종류의 국군해외 파병에 합법화하고 있음.
- 둘째, 국방교류협력 증진을 법안의 목적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해외파견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음. 국방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떠한 해외파견도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셋째, 유엔 결의안을 다국적군 파병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과거 이라크전이 애초에 근거 없는 전쟁이었음은 널리 알려져 있었음에도 당시 정부는 유엔 결의안을 근거로 이라크전에 파병을 강행한 바 있음.
- 넷째, “비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교육훈련”의 전형적인 사례인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명목의 파병은 국토방위에 헌신해야 할 국군을 ‘상업적 목적으로 해외로 파견했다’는 비난에 직면해 왔음. 이 조항대로라면 상업적 이유를 포함하여 정권이나 군의 이해에 따라 이루어진 파병들이 ‘국방교류협력’이라는 외피를 쓰고 합법화될 우려가 높음.
- 다섯째, 재해구호와 재건지원 목적의 파병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문성과 효과성,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군대 파견보다 해당분야 민간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이미 제도적으로도 긴급구호에 민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군부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이 법에 근거할 수 있음.
- 여섯째, ‘기타’ 해외파견 조항은 경우에 따라 모든 종류의 파병을 포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위헌성은 물론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남용의 위험이 큼.
- 일곱째, 그 동안 인원수가 적어 사안의 중대함이 적다는 이유로 국회의 검토나 동의 없이 편법적으로 이뤄져 온 군인의 ‘개별파견요원’은 법안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국군의 임무를 규정, 제한하는 법은 인원수와 상관없이 군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 여덟째, ‘파견 종료 요구권’에 대한 조항은 이미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임.
- 아홉째, 국군해외파견 법안 제안이유에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을 표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조항을 살펴보면 국회와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할 실질적 내용은 전혀 제안하지 않고 있어 선언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며,

해당 법안 통과에 반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 1. 헌법적 근거 없는 파병까지 정당화하여 국군 해외파견의 범주를 대폭 확대

- 해당 법안은 1조와 2조에서 국군 해외파견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특히 제2조에서 ▷다국적군 소속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재난구호 등 교류협력활동 ▷기타 국제평화유지 위한 활동 등 각종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함. 이러한 파병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에 명시된 국군의 기능(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임.
- 법안은 국군 파견의 목적과 유형 등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지만, 오히려 국군의 활동 영역이 헌법 제5조 제1항에 명시된 국제평화주의 정신을 벗어나는 범위까지 자의적이고 포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함.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 특히, 해외파견활동의 범주에 ‘다국적군 파병’과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병’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은 헌법에 저촉되는 다양한 종류의 국군해외 파병에 합법의 외피를 씌우는 위험천만한 일임.
- **해외파병은 자동으로 국제평화나 분쟁예방, 국익에 기여하지 않음.** 해외파병이 분쟁예방이나 갈등해결에 오히려 해가 되거나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사례는 여럿 있었음. 파병 결정과정 중 국익에 대한 판단도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과거 한국군의 이라크, 아프간, UAE 파병 등에서 이는 여러차례 입증된 바 있음.
- 해당 법안은 분쟁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분쟁은 대화와 협상, 외교력 같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함. 따라서 국제 평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군사활동보다는 외교적·평화적 활동, 갈등의 예방, 민간 차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군부대 파견을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이유로 19대 국회에 이와 유사한 법안이 제출되었을 때, 국내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역시 해당 법안이 “우리 헌법의 틀에서는 전혀 타당성을 발견할 수 없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 국군해외파견 법안 제1조는 해외파견활동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이념을 구현함과 아울러 국방교류협력의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제2조에는 해외파견활동의 범주를 ‘다국적군 참여’뿐만 아니라 ‘비분쟁지역 국방교류협력 활동’까지 대폭 확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법안 제1조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우리 헌법의 이념은 다국적군 참여, 타국 군대의 교육훈련, 재난구호 등을 위해 국군을 해외에 파견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려움.
- 국회는 이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른바 UN PKO 법)"을 제정 운용

해 유엔이 요청하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국군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군의 해외파견 범위를 더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 2. ‘국방교류협력’ 은 해외파견의 결과이지 목적이 될 수 없음

- 이 법안은 제1조에 국방교류협력의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교류협력 증진 그 자체는 군부대 해외파견의 결과이지 목적이 될 수 없음.
- 다른 국가에 자국의 군대를 파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류의 성질을 띠므로 해외파견의 목적 그 자체가 교류협력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파병도 목적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음. 따라서 국방교류협력 증진은 목적에서 삭제되어야 마땅함.

## 3. ‘유엔 결의안’ 이 다국적군 파병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음

- 법안 제2조는 국군의 다국적군 참여 조건으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유엔의 결의안이 파병의 정당성을 항상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음.
- 과거 한국 정부는 이라크전 다국적군 파병을 추진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라크 결의안’을 근거로 제시했음. 그러나 해당 결의안은 이라크 전후 대책안을 승인한 것이지 이라크전 자체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정당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판단한 결의안이 아님. 게다가 결의안이 통과될 당시 이미 당초 전쟁의 명분이 되었던 ‘대량살상무기 보유’와 ‘테러조직과의 연계성’ 의혹은 거짓으로 드러났음.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해당 결의안을 근거로 이라크전 파병을 강행했음.
- 이러한 문제점은 영국 이라크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칠콧 보고서’에도 명확히 제기되고 있음. 최근 7년간의 조사를 마치고 발표된 이 보고서는 이라크 전쟁에 참전을 결정한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의 정책 결정이 정치적으로 타당했는가를 검토한 결과 이라크전은 명확한 판단 근거 없이 이뤄진 “잘못된 전쟁”이었으며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의 오판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있음.
- 보다 근본적으로는, 특정 국가들로 이뤄진 다국적군이 국제평화유지에 실제로 기여하는지 불명확함. 지난 10여 년간 이라크 파병, 아프간 파병을 거치면서 미국 등 강대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점령행위에 우리 군대를 파견한 것이 국내외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어왔음.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이라크/아프간에 행해진 전쟁과 점령은 이를 주도한 미국 내에서조차 환멸 섞인 내부논란에 직면한 바 있음. 이라크 침공과 점령으로 인해 이슬람국가(IS)라는 비극이 발생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파병에 가담한 한국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임.
- 다시 말해 ‘다국적군 파병’이 자동적으로 국제평화에 기여하지는 않으며, 유엔의 결의안에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다국적군 파병이 곧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유엔 결의'만으로 다국적군 파병의 적절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한 법안 제2조는 우리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4. 자의적 파병에 '교육훈련' 명목 남용될 수 있음

- 이 법안 제2조는 비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교육훈련도 해외파견활동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음.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을 명목으로 강행된 국군부대의 UAE 파견은 "당해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교육훈련"의 전형적인 사례에 속함.
- 그러나 UAE 파병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UAE에게 원전수출의 대가로 제공한 일종의 군사원조'로서, 국토방위에 헌신해야 할 국군을 '상업적 목적으로 해외로 파견했다'는 비난에 직면해 왔음. 때문에 2010년 파병 동의안은 통과 과정에서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대한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국회 본회의에서조차 질의나 토론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많은 논란 속에서 직권상정으로 통과되었음.
- 비분쟁 지역에 상업적 대가로 파병된 아크 부대의 경우, 한국 특전부대의 전투력 향상, UAE 특전부대 정예화, 작전수행능력 향상, 국익 창출, UAE 측 파병 요청 등을 파병과 파병연장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음. 아크 부대 파견으로 UAE의 국방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동지역의 군사적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며, 안보위기 시 국제적 공조나 우방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다는 주장으로 들림. 그러나 UAE 특전부대의 정예화와 작전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이유와 연합훈련 실적 등은 한국군 파병이 국제평화 기여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반면, UAE는 아랍의 봄 이후 2011년에 일어난 바레인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병력을 바레인에 파병했는데, 시위 진압에 동원된 UAE 병력 중 일부가 한국군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주변국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병력을 파병한 UAE에 군사훈련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임.
- UAE 아크 부대처럼, 원전 수주에 관한 의혹들이 아직까지 해명되지 않은 가운데 수주의 대가로 특전부대를 장기 주둔시키는 사례는 반복되어서는 안 됨. 이 법안대로라면 앞으로 상업적 이유를 포함하여 정권이나 군의 이해에 따라 이루어진 파병들이 '국방교류협력'이라는 외피를 쓰고 합법화될 우려가 높음.

#### 5. 긴급구호와 개발사업 특수성 무시한 '재난구호' 를 위한 파병

- 국군해외파견 법안에서 '재난구호'를 국방교류협력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러나 이는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천만한 편의적 발상임.



- 재난 상황이 닥친 이웃 국가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연한 일임. 그러나 정부는 재난지역의 피해 복구에 실효성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 긴급구호 활동 및 개발사업의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에는 구급대 혹은 개발구호 전문단체나 업체가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음. 물론 공병부대나 의료부대가 인도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같은 비용을 들일 경우 민간구급대와 전문업체가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임.
- 국제사회의 인도적 위기의 증가와 함께 군의 인도적 지원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유엔과 국제적십자 등이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UN 인도주의 기구들이 포함된 의사결정기구인 UN 기구간 상임위원회(IASC)의 '복합적 위기상황에 대한 민간 가이드라인과 지침'이나,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의 '재난구호 시 외국군 등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소위 오슬로 협약)'에 따르면, 인도적 지원의 핵심 원칙인 정치적 중립성 문제, 인도적 지원의 목적과 효과에 있어서 군의 해외긴급구호나 인도적 지원 활동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 이에 인도적 지원 활동에서 군대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그것은 단기간 내의 활동이어야 하며, 인도적 지원 메커니즘에서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국제개발협력 단체들도 군의 인도적 지원 활동은 정치 군사적 이해와 전략에 따른 지원, 비전문성(특히 구호대상이 아동, 여성이라는 점에서), 군대 파견에 따른 기지건설 등 추가비용 발생과 같은 원조의 비효과성, 원조의 군사화 문제를 제기해왔음.
- 또한 군 부대의 동원은 쉽고 빠르기 때문에 재난구호를 위한 군대파병을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업무 효율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민간차원의 지원이 더 적합한 경우에도 군대파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 군대의 본질적인 임무는 전투수행임.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보급과 복구 임무를 병행할 뿐 복구와 재건이 주된 임무는 아님. 부득이 평화유지 임무와 인도지원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할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이 경우 이미 입법화되어 있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른바 UN PKO 법)」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족함.
- 현행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해외 긴급 재난 발생 시 “외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제구조대, 소방공무원, 한국국제협력단 소속 직원 또는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 국제협력요원, 보건의료지원팀,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군부대를 파견하지 않아도 신속한 구호 및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정 필요하다면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군의 자원 및 군부대 투입은 이미 가능한 상황임.
- 군부대의 재건지원에 대한 문제점도 효과성이 의문시되는 것은 마찬가지임. 이라크 파병 당시 한국정부는 이라크 재건 지원을 파병의 주목적이라 했으나, 이라크 재건 지원 예산은 자이툰 파병 예산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음. 뿐만 아니라 재건지원 예산의 절반도 사실



치안유지비용이었음. 아프간의 경우에도 한국이 지원한 재건 비용 대부분이 파병부대 주둔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2010년 아프간 재건팀 예산의 80%이상이 군부대 건설에 쓰여 애초에 계획했던 재건사업들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음.

- 원조분야에서 군대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한계로 군을 통한 분쟁해결이나 재건지원은 고비용 저효율일 수밖에 없음.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지역개발보다 군사적 목적에 따른 가시적 사업에만 치중되었음. 따라서 분쟁해결·평화정착 및 재건지원을 위해 군을 파견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일 수밖에 없음.
- 게다가 우리 정부, 특히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난 10여 년간의 다국적군 파병 관련 과연 다국적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재건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보고서 하나 국회에 제출한 바 없음.
- 정부는 재난구호, 재건지원과 같은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토방위를 목적으로 소집된 군인들을 무분별하게 해외에 파견하기 보다는 재난지역의 피해 복구와 재건사업에 실효성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 긴급구호 활동 및 개발사업의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또한 국제개발원조 차원에서 긴급구호분야 및 취약국가 개발에 전문성 있는 민간인력과 장비에 적극 투자하여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 6. 위헌성은 물론 남용 위험이 큰 ‘기타 해외파견’ 조항

- 이 법안은 제2조 정의에서 ‘기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외에 국군이 국제평화 유지를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활동’을 정의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음.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19대 국회에 동일한 내용의 법안에서, 경우에 따라 모든 종류의 파병을 포함할 수 있는 ‘기타 조항’을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국제평화유지’라는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며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기 때문임.
- 헌법 제5조에 의해 군의 해외파병은 아주 제약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포괄적 위임의 조항은 법치주의의 근본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해외파병에 대한 헌법적 제한을 무너뜨리게 됨. 따라서 해당 조항은 국군해외파견 법안의 위헌성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조항이라고 지적받고 있음.
- 특히, 해당 조항은 조문만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남용의 위험이 큼. 군사에 관한 문제는 입법부나 사법부보다 행정부의 판단 권한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부분인데, 행정부가 판단의 재량을 남용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을 두는 것은 자칫 위헌적 활동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7. 법적 근거 없는 군인의 ‘개별파견’ 문제는 누락함

- 이 법안은 그 동안 법률적 근거나 국회동의 없이 파견되어 논란이 되었던 군인의 ‘개별파견요원’을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국군의 임무를 규정, 제한하는 법은 인원수와 상관

없이 군인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헌법은 국군 '부대'뿐만 아니라, '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개별파견은 최소한의 국회 동의도 없이 불법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개별파견요원 역시 국군의 일원이며, 1~2명에 해당하는 소수의 인력일지라도 교육훈련에 파견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음.

- 그동안 개별파견 군인의 인원수가 적어 사안의 중대함이 적다는 이유로 편법적으로 국회의 검토나 동의 없이 이뤄져 온 것이 사실임. 과거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할 당시, 부대가 아닌 개인 파병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헌법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라며 "엄중해야 할 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국가 정책의 판단을 행정 편의적으로 그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8. 국회는 이미 '파견 종료 요구권' 을 가지고 있음

- 해당 법안의 제정과 무관하게 국회는 지금도 언제든지 정부에 해외파견 종료를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국방부는 현재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과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라 파병부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과 훈령에는 국회가 파병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철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이미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오히려 문제는 해외파견에 대한 투명하고 충분한 평가 정보가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는 것임.

## 9. 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도화할 실질적 조항 미비

- 법안은 해외 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도화할 것을 발의 취지로 하고 있으나, 특별히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항은 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법안은 해외파병 시 헌법과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제3조), 정부가 파병지역에 대한 조사활동보고서를 사전에 작성할 의무(제5조), 매년 정기국회에 국군 파견부대의 구체적인 활동성과, 활동계획, 파견지역의 정세 등을 보고할 의무(제11조) 등을 제안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과거에도 의례적인 수준에서 시행하여 오던 것으로서, 해외파견 국군부대의 실제 활동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데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음.
- 지난 10여 년간 외교부나 국방부는 해외파견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숭한 비판을 받아왔음. 이라크 아프간 등 민감한 파병지역에 대한 민간용역분석보고서나 객관성 있는 국제보고서를 작성하지도 공개하지도 않았고, 파견부대의 활동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부분의 정보를 비밀에 부쳐 왔으며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자료나 결산자료조차 허위로 제출한 예가 적지 않았음.
- 해외파병에 관한 평가, 검증 역시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왔음. 많은 논란을 거듭했던 이라크 파병도 이후에 평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이라크와 아프간의 경우에는 민간인의 출입국이


불허되어 파병활동에 대한 평가, 검증이 불가능했음. 따라서 해외파병을 촉진하는 법률을 제정하기에 앞서 그동안의 한국군 파병을 평가하여 파병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

- 그러나 법안은 군의 이 같은 자의적인 비밀주의와 위법행위를 제어할 어떤 실질적인 조항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게다가 법안은 국군파견부대가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사실상 거부했을 경우 국회나 사법기관이 어떤 제약을 가할 수 있는지 전혀 명시하지 않았음.**
- 도리어 매우 포괄적인 불이익 금지 조항(12조)를 명시하는 등 파견의 불법 가능성이나 현지 활동에서의 위법가능성에 대해 면책의 여지를 두고 있음.

## 결론

---

### 기존의 법률만으로 충분하므로 별도의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없음

- 한국군은 그동안 기존 법률을 근거로 국제평화유지와 긴급구호를 위한 해외파병을 진행해 옴(레바논, 남수단 등). 현재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제연합(UN)이 요청하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의 경우, 국군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음. 재난구호의 경우에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군의 긴급구호 활동 기여가 가능한 상황임. 따라서 이외에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가 없음.
- 그외 다국적군 파병이나 비분쟁지역 파병, 기타 파병 등은 헌법이 국군에 부여한 의무를 넘어서거나 국제평화유지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파병임. 해당 법안을 제정한다고 해서 위헌적인 파병이 합법화될 수는 없음.
- 그러므로 국방부의 해당 법안 제정을 반대함. 

## 참고문헌 Reference

---

1. [자료-보고서] 이라크 점령 및 자이툰 부대 파병의 실태와 이라크 철수의 근거  
<http://www.peoplepower21.org/Peace/574605>
2. [보도자료] 파병연장 이해해달라면서 파병관련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의견서] 이라크파병 관련 합동참모본부의 답변에 대한 의견  
[참고자료] 이라크파병 관련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합동참모본부의 답변  
[참고자료] 이라크파병 관련 정보 비공개결정 처분에 대한 참여연대 답변서  
<http://www.peoplepower21.org/Peace/576727>
3. [반박문] “자이툰, 쿠르드 민병대 훈련 사실 없다”는 합참 주장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  
<http://www.peoplepower21.org/Peace/576760>
4. [토론회 자료집] 레바논 파병과 한국군 해외파병정책의 쟁점과 조건  
<http://www.peoplepower21.org/574825>
5. [토론문]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의 쟁점과 문제점  
<http://www.peoplepower21.org/581879>
6. 아프간 지역재건팀(PRT) 실태에 대한 국제NGO 및 UN긴급구호 관계자의 분석과 권고들  
<http://www.peoplepower21.org/Peace/581729>
7. [이슈리포트] 유엔 PKO 파견 확대 및 상비부대 설치 주장에 대한 비판  
<http://www.peoplepower21.org/Peace/578227>

---

## 참여연대 정책자료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행일 2016. 8. 23

발행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담당 황수영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mailto:peac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6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http://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

---